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개정 알림

'22. 12. 29.(목) 체류관리과

'22.12.2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3.1.1.부터 방문취업(H-2) 활동범위 지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취업가능범위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나. 지정 방식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나열(포지티브) 방식
- 서비스업* :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 * 「서비스업 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라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7.1.)에서 16개 대분류(E, G~U)를 말함

다. 활동범위 기준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2)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 허용
 - ☞ 농업(소분류 3개), 어업(세분류 1개, 세세분류 1개), 광업(중분류 3개), 제조업(췌 업종, 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건설업(전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한함)
- 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3)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허용
 - ☞ 중분류 20개, 소분류 1개 허용 제외
 - ※ 단,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표준직업분류표」 산업분류체계는 대분류(알파벳 코드) → 중분류(2자리코드) → 소분류(3자리코드) → 세분류(4자리코드) → 세세분류(5자리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되거나 제외됨**
(예시①) 소분류 업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이므로, 하위 세분류 업종인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업(0122) 등도 허용되며, 하위 세세분류 업종인 '젖소 사육업(01211), '육우 사육업(01212) 등도 모두 허용
(예시②) 중분류 업종인 '수상 운송업(50)이 허용 제외업종이므로, 하위 소분류 업종인 '해상 운송업(501)이나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뿐만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 제외됨

라. 활동범위 세부내용

1.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허용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허용 (총 10개: 대 2, 중 3, 소 3, 세 1, 세세 1)

| 허용업종 | | | | | 상세설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1. 농업 | ① 작물 재배업(011) | 1. 업종 설명 (소분류)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 재배, 공나물 재배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0112),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 기타 작물 재배업(0114), 시설작물 재배업(0115)의 5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② 축산업(012) | 1. 업종 설명 (소분류)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위 업종 소 사육업(0121), 양돈업(012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0123), 기타 축산업(0129)의 4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③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농업(01)의 하위 소분류 업종 중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 대분류 A의 하위 중분류 업종 중 '임업'(02)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 03. 어업 | 031. 어로 어업 | 0311. 해수면 어업 | ④ 연근해 어업(03112) | 1. 업종 설명 (세세분류)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허용업종 | | | | | 상세설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 | | | | 2. 하위업종 없음 |
| | | 032. 양식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 ⑤ 양식 어업(0321) | | 1. 업종 설명 (세분류)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업종 해수면 양식 어업(03211),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
| B. 광업 (05~08) | ⑥ 금속광 업(06) | ☞ 어업(03)의 하위업종 중 '연근해 어업'(03112),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는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 1. 업종 설명 (중분류)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속광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된다. 우라늄 및 토륨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 | | |
| | | 2. 하위업종 철 광업(061), 비광철금속 광업(0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 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⑦ 비금속 광물 공업; 연료용 제외 (07) | 1. 업종 설명 (소분류)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 | | |
| | ⑧ 광업 지원 서비 스업(08) | 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수리·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 | |
| | | 2. 하위업종 철 광업(061), 비광철금속 광업(06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대분류 B의 하위 중분류 업종 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⑨ C. 제조업 (중분류 10~34) ※ 단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 1. 업종 설명 (대분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 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 | |

| 허용업종 | | | | | 상세설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 | 2. 하위 업종 제조업(대분류 C)의 하위 중분류(10~34) 및 그의 하위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
| ☞ 대분류 D 및 중분류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전 업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 ⑩ F. 건설업 (중분류 41~42) ※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 | | 1. 업종 설명 (대분류)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 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 | | 2. 하위 업종 건설업(대분류 F)의 하위 중분류(41, 42) 및 그의 하위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

2.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 (총 21개: 중분류 20, 소분류 1)

| 제외업종 | | | | | 상세설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 ① 수도업 (36) | 1. 업종 설명 (중분류)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 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수도업(36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인 생활용수 공급업(3601/36010), 산업용수 공급업(3602/36020)을 포함한다. |
| | ②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1. 업종 설명 (중분류) 오염된 건물,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제 외 업 종 | | | | | 상 세 설 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 | ☞ 대분류 E의 하위 업종 중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G. 도매 및 소매업 (45~47) | ③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1. 업종 설명 (중분류)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을 포함한다. | | | |
| | | 2. 하위 업종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453)의 3개 소분류 업종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4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H. 운수 및 창고업 (49~52) | ④ 육상운 송 및 파 이프라인 운송업(49) | 1. 업종 설명 (소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 천연가스, 정제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 |
| | |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491~495)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단,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 | | | |
| | ⑤ 수상 운송업(50) | 1. 업종 설명 (중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2. 하위 업종 해상 운송업(5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⑥ 항공 운송업(51) | 1. 업종 설명 (중분류)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 | 2. 하위 업종 항공 여객 운송업(511), 항공 화물 운송업(5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⑦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 스업(52) | 1. 업종 설명 (중분류)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 | 2. 하위 업종 보관 및 창고업(521),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5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단,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 | | | | |
| (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제 외 업 종 | | | | | 상 세 설 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 | | | | <p>(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u>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u>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식육을 운반하는 업체</u>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u>택배서비스사업</u>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u>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u>으로 취업하는 경우</p> |
| ☞ 대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 55~56)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 J. 정보 통신업 (58~63) | ⑧ 출판업 (58) | <p>1. 업종 설명 (중분류)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 있다.</p> <p>2. 하위 업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p> | | | |
| | | ☞ 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 | | |
| | ⑨ 우편 및 통신업 (61) | <p>1. 업종 설명 (중분류)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p> <p>2. 하위 업종 공영 우편업(611)과 전기통신업(6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p> | | | |
| | | ⑩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p>1. 업종 설명 (중분류)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 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p> | | |
| ⑪ 정보서 비스업(63) | <p>1. 업종 설명 (중분류)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을 말한다.</p> <p>2. 하위 업종</p> | | | | |

| 제 외 업 종 | | | | | 상 세 설 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4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K. 금융 및 보험업 (64~66) | ⑫ 금융업 (64) | 1. 업종 설명 (중분류)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 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 |
| | ⑬ 보험 및 연금업 (65) | 1. 업종 설명 (중분류)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 ⑭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6) | 1. 업종 설명 (중분류)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L. 부동산 업(68) | ⑮ 부동산 업(68) | 1. 업종 설명 (중분류)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 | | |
| | | 2. 하위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 ⑯ 연구개발업(70) | 1. 업종 설명 (중분류)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으로 분류된다. | | | |
| | ⑰ 전문 서비스업(71) | 1. 업종 설명 (중분류)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 | | |

| 제 외 업 종 | | | | | 상 세 설 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 | <p>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p> <p>2. 하위 업종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경영컨설팅 서비스업(715), 기타 전문서비스업(716)의 6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p> | | | |
| | ⑱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p>1. 업종 설명 (중분류)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으로 분류된다.</p> <p>2. 하위 업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p> | | | |
| |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 ⑲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 <p>1. 업종 설명 (중분류)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p> <p>2. 하위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p> | | | |
| | | ☞ 단,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 | | |
|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⑳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 <p>1. 업종 설명 (소분류)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2. 하위 업종 고용 알선업(7511), 인력 공급업(751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p> | | |
| |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 | | | |
| | ☞ 중분류 75의 하위 업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제 외 업 종 | | | | | 상 세 설 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 | ☞ 대분류 N의 하위 업종 중 '임대업, 부동산 제외(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p. 교육 서비스 업(85) | ㉔ 교육 서비스업(85) | 1. 업종 설명 (중분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훈련학원, 성인교육 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지원 서비스 업이 포함된다. 2. 하위 업종 초등 교육기관(851), 중등 교육기관(852), 고등 교육기관(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지원 서비스업(857)의 7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대분류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대분류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대분류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대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대분류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대분류 U(국제 및 외국기관)(99)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 ※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에서 대분류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대분류 U(국제 및 외국기관)(99) 업종의 공공성, 주된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제외업종에 추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3년 중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임 | | | | | |
| 【주의】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은 가능업종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한 경우에 한하며 ,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 | | | |

마. 시행일자 : 2023. 1. 1.